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공보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의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항공보안사고 은폐·축소·조작·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,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·축소·조작·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별표 제1호라목3)을 5)로 하고, 같은 목에 3) 및 4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) 현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소속 종사자 등의 위반을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교육 소홀, 정보 미제공 등 관리·감독상의 책임이 큰 경우
- 4) 법 제33조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반 사실을 은폐·축소·조작·변조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) ① (생 략)	제12조(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압력실을 사용한 검색</u>	<u><삭 제>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39